

(2023년)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 공고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'(2023년)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. 9. 12.

부산광역시장

1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사업
- 사업기간 : 2023. 9. ~ 2025. 5. *단 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최대 2년간 지속 지원(사업별 상이)
- 신청기간 : 2023. 9. ~ 2023. 12. *12월 접수분은 2024년 1월 지원 2024·2025년 별도 공고예정
- (2023년) 주요 사업내용

구분	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	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	이주비 지원
지원대상	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	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	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
지원세대	약 240세대	약 420세대	약 600세대
지원내용	대출이자 전액지원 (금리 연 2.1%한도)	월세 실비 지원 (세대당 월 40만원 한도)	이주비 150만원 지원
지원기간	2년간 (24회차 납입분까지)	2년간 (24회차 납입분까지)	생애 1회
소요예산*	1.13억원	4.29억원	9억원

* 부산시 재정여건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 될 수 있음

2. 사업별 세부 추진계획

1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 지원

□ 사업 개요

- (지원대상)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『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*』 실행한 자
* 기금 저리대출, 대환 대출,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(무이자 초과분)
- (신청기간) '23. 9. ~ '23. 12.
- (지원인원) 약240세대
- (지원기간) 선정월로부터 2년간 ▶최대(연속)24회차 납입분까지
- (지원내용)
 - (기금 저리, 대환대출) 대출 이자 전액 지원(1.2~2.1%)
 - (최우선변제금 버팀목대출) 최우선변제금 상당금액 제외한 초과 대출액에 대하여 금리한도 연 21% 까지 이자 전액 지원
- (지원방법) 신청인이 이자 先납부,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
- (소요예산) 약 1.13억원(시비) ▶ 약240세대 * 2,250,000원/연 * 2년

□ 자격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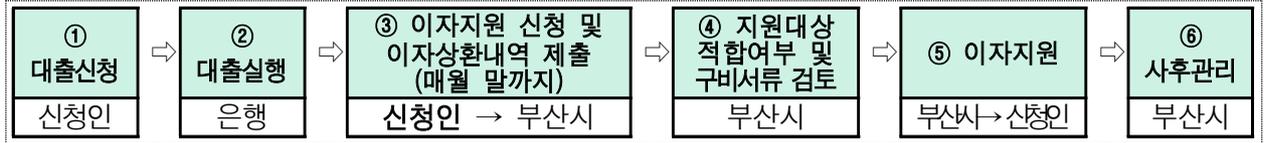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
 - 전세사기 피해 주택 및 신규 전세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할 것
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상 피해자(등) 결정자
 - '23년 이후 『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』(대환대출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) 실행자
 - 전세계약서상 임차인, 대출 명의자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
□ 지원 범위

- 대출이자 상환 내역서에서 확인 가능한 이자액에 한함
- 사업시행 전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
 - (예1) 대출기간 '23.2~'25.1.(2년)의 경우, '23.9월 사업 신청 시→'23.2~8 이자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
- 최대 (연속)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
-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, 무이자 대출액을 초과한 대출액에 대하여 이자 전액 지원 (금리 21% 초과 시에도 21% 한도 적용)
- 본 사업과 월세 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
 - (예1) 본 사업 지원중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대출이자 지원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 만큼 월세 지원 가능
 - (예2) 전·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,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

□ 추진 절차

- 이자상환 증빙서류,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



□ 신청 및 지원시기

- (신청) 대출 실행 후 이자를 1회이상 상환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
- (지원)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

□ 구비서류
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대출사실확인서, 대출이자 납부 증빙서류(대출이자납입 내역서)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, 통장사본, 개인정보수집·이용등 동의서, 신분증

□ 지원 제외, 종료, 중단 등

- (지원제외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신청하는 경우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
 -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자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
- (지원종료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
 - 대출기간 만료 또는 중도 상환
 - 대출 실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
 - 정부 및 지자체의 전세피해자 대상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
 - 관외 전출 시,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
- (지원중단)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, 사유 없이 이자 상환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 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
- (선정취소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

②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

□ 사업개요

- (지원대상)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
- (신청기간) '23. 9. ~ '23. 12.
- (지원인원) 약420세대
- (지원기간) 선정월로부터 2년간 ▶ 최대(연속)24회차 납입분까지
- (지원내용) 월세 실비 지원 (세대당 월 400,000원 한도)
- (지원방법) 신청인이 월세 先납부,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
- (소요예산) 약 4.29억원(시비) ▶ 약420세대 * 40만원/월 * 24개월

□ 자격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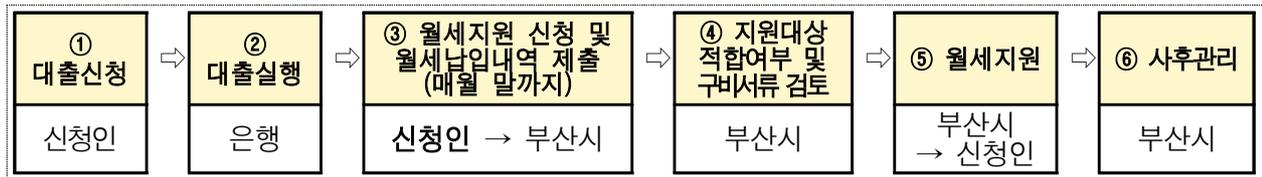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
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상 피해자(등) 결정자
 -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내 소재하면서, 부산광역시내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-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,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
□ 지원 범위

-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(세대당 월 400,000원 한도)
 -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액에 한하며, 관리비 등은 제외
 - 긴급 주거지원(공공 임대주택)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,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
- 사업시행 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
 - (예) 계약기간 '23.2~'25.1.(2년)의 경우, '23.9월 사업 신청 시→'23.2~8 월세 납입분은 소급 지급 불가
- 최대 (연속)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
-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차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
 - (예1) 본 사업 지원중 전세피해 임차인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실행한 경우, 1인 24회차 범위 내에서 월세 지원 횟수를 차감한 남은 횟수만큼 전세대출 지원 가능
 - (예2) 전·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,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

□ 추진 절차

- 월세 납부 증빙서류,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



□ 신청 및 지원시기

- (신청) 민간주택 이사 후 월세를 1회 이상 납입하고 당월 말일까지 신청
- (지원)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

□ 구비서류
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(부·모·본인 기준) 가족관계증명서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, 월세납부 증빙서류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등 동의서, 신분증

□ 지원 제외, 종료, 중단 등

- (지원제외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
 -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(긴급주거지원 포함)
 - 직계존·비속, 형제·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
 - 타 시·도에 소재한 민간주택 월세계약 체결한 경우
 -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(주택임대료) 지원사업 참여자 (창년 월세 지원 사업 등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
- (지원종료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
 -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(주택임대료)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
 - 관외 전출 시,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
- (지원중단)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,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지원중단
- (선정취소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월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

③ 이주비 지원

□ 사업개요

- (지원대상)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, 피해주택에서 공공·민간주택으로 이전한 세대
- (신청기간) '23. 9. ~ '23. 12.
- (지원인원) 약600세대
- (지원내용) 가구당 이주비 150만원 정액 지원 (생애 1회에 한함)
- (지원방법) 신청인이 이주비 先납부, 부산시에서 신청인 계좌로 後입금
- (소요예산) 약 9억원(시비) ▶ 약600세대 * 150만원(1회)

□ 자격 요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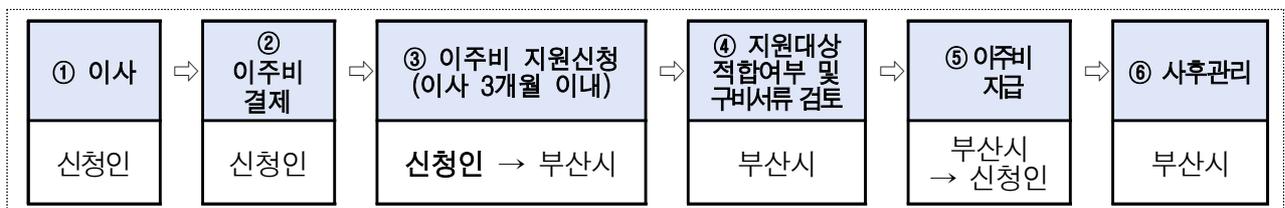
-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- 신청일 현재,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
 -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상 피해자(등) 결정자
 -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,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공공·민간 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
 -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,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(자가의 경우, 주택명의자),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

□ 지원 범위

- 이주비 지원 (생애 1회 지원)

□ 추진 절차

- 실제 이사여부, 주민등록 거주 등 확인 후 개인별 계좌로 지급



□ 신청 및 지원시기

- (신청) 공공·민간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지원 신청
※ 단, 이주비에 한해 ‘전세사기피해자등’ 6월 결정자가 6월에 이주하였을 경우 9월에 신청 가능
- (지원)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을 익월 20일 이내 지급

□ 구비서류

-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,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,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, 통장사본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등 동의서, 신분증

□ 지원 제외, 종료, 선정취소

- (지원제외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
 -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경우
 - 타 시·도에 소재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
 - 동일한 이사내역에 대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이사비 지원사업 수혜자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
- (지원종료)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
 -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비(이사비)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
- (선정취소)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주비(이사비)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전액 환수

3. 기타(유의) 사항

- 본 사업은 부산시 주민등록 거주자에 한하여 지원하며, 관외 전출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- 만약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후 확인된 경우, 지원대상자 취소·중단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, 제재부가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용기간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부칙 제4조에따른 기간을 적용하며 2024년·2025년 사업공고는 별도 게재할 예정입니다.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

4. 상담 및 문의

사업 문의	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담 문의
부산광역시 주택정책과 ☎051-888-4251~4258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☎051-888-5101	- 주택도시보증공사 ☎1566-9009 - 대출을 희망하는 각 금융기관 콜센터

5. 신청 및 접수

- 홈페이지 접수가 원칙이며,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방문접수 허용

온라인접수	- 부산시청>분야별정보>도시·건축·주택>주택>전세피해지원 >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주거지원
방문 접수	- 부산시전세피해지원센터 (부산시청 1층, 대강당 우측) *운영시간) 09:00~18:00 월~금 (점심시간 12:00~13:00 제외)

* 전세피해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및 월세 한시 지원의 경우, 매월 증빙자료 제출 필요

[참고] 사업별 제출서류 목록

사업명	제출서류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주민등록등본 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, 1개월 내 발급, 과거주소이력 포함)
	③ 대출사실 확인서 (은행에서 발행한 금융거래확인서 제출)
	④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- 대출이자납입내역서 등(은행 발행본 제출)
	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사본
	⑥ 통장사본 (신청인 본인의 이자 이체 통장)
	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⑧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주민등록등본 (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, 1개월 내 발급, 과거주소이력 포함)
	③ 가족관계증명서(본인, 부, 모 기준 각1부) - 본인 기준 발급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,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) - 부모 기준(모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)
	④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사본
	⑤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(월세)계약서 사본
	⑥ 월세납부 증빙서류 - 계좌이체내역, 통장사본, 카드결제 또는 인터넷 결제내역,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
	⑦ 통장사본 (신청인 본인통장)
	⑧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⑨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이주비 지원	① 지원신청서
	② 주민등록등본 (본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, 1개월 내 발급, 과거주소이력 포함)
	③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사본
	④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
	⑤ 이주비용 지출증빙서류 -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(입금증), 사다리차 이용비 및 에어컨이전·설치비 영수증(입금증), 도배비 영수증(입금증), 임차권등기 설정 영수증(입금증), 부동산 중개수수료 영수증(입금증) 등
	⑥ 통장사본 (신청인 본인통장)
	⑦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등 동의서
	⑧ 신분증 지참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
■ [별지 제1호서식]

부산광역시 전세사기 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 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 (2쪽 중 1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
------	------

지원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대출 이자 지원 (①)	<input type="checkbox"/> 월세 한시 지원 (②)	<input type="checkbox"/> 이주비 지원 (③)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전세사기 피해주택	주소
-----------	----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민등록 주소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

대리인 ※대리인 선임한 경우 작성	성명	생년월일
	주민등록 주소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

▶ 지원신청 내용 ※ 신청하시는 지원사업에 작성하며, □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①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	대출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기금저리대출 (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대출)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환대출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
	대출금액	원	대출기간	~
	대출은행	은행	대출금리	연 %
	월 이자금액	원	이자납부일	매월 일
	이자지원 신청기간 (최대2년)	~	최우선변제금액(최우선변제금 버팀목 대출의 경우 작성)	원

②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한시 지원	월세주택 주소			
	계약일자	전입일자		
	임대차 계약기간	~	월세지원 신청기간 (최대2년)	
	월세금액	원	월세납부일	매월 일
	주택 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아파트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텔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세대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립 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중 <input type="checkbox"/> 다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

③ 이주비 지 원	이주주택 주소
	이사일자
	이주비 관련 지출내역 (건명, 지출금액)

▶ 신청인 계좌번호 ※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계좌번호를 작성합니다.

신 청 인 계좌번호	은행명	예금주
	계좌번호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(선택)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확인사항 (필수)

- ① 부산광역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업공고문에 따른 지원대상기준을 충족하고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,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음을 확약합니다.
- ② 만약 지원대상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취소(중단) 및 지급된 지원금의 환수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 조치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위와 같이 부산광역시 전세사기등 피해자 금융·주거지원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부산광역시장 귀하